

2016년 제34회 법원행정고등고시 제2차시험 기출문제

행정법

【문 1】 甲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A 토지에 단독주택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다. A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아니다.

乙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B 토지에 단독주택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다. B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乙은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허가신청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丙은 건축법 제11조 제1항에 따라서 C 토지에 숙박시설의 신축허가를 신청하였다. C 토지에 숙박시설을 신축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아니다. 다만 건축법 제11조 제4항은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고려할 때 부적합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허가가 거부될 수 있다고 규정한다.

丁은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D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D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은 아니다.

戊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에 따라서 E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신고서를 제출하였다. E 토지에 단독주택을 신축하는 것은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의 대상이 된다. 이에 따라 戊는 개발행위허가에 필요한 서류를 건축신고서에 첨부하여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관할 구청장은 “건축물의 신축이 주변 환경에 적합하지 않거나 주변 환경과 조화를 이루지 못한다.”는 이유를 들어서 甲, 乙, 丙의 허가신청에 대해서는 각 거부처분을 하고, 丁, 戊가 제출한 신고서를 각 반려하였다. 아래의 각 설문에 답하시오. (총 50점)

1. 甲, 乙, 丙, 丁, 戊가 구청장을 상대로 그 거부 내지 반려에 대해서 각각 제기하는 항고 소송의 적법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甲, 乙, 丙이 구청장을 상대로 그 거부에 대해서 각각 제기하는 항고소송에서 원고가 본안에서 승소할 가능성을 개별적으로 서술하시오. (20점. 단 지문에 기재한 것 이외의 허가요건은 갖춘 것으로 가정한다.)
3. 구청장에게 제출한 신고서가 반려되고 그 취소가 없는 상태에서 곧바로 신축공사에 착수한 丁, 戊가 건축법 제111조 제1호에 따라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0점)

[문 2] 甲은 전통사찰인 乙(이하 '이 사건 사찰'이라고 한다)이 소유하는 경내지인 X 토지(이하 '이 사건 토지'라고 한다)를 매수하였으나 乙이 그 소유권이전무를 이행하지 않자 乙을 상대로 그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절차 및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9조에 따른 부동산양도허가 신청절차의 이행을 구하는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승소판결이 확정되었고, 그에 기하여 2016. 5. 2. 관할 도지사에게 부동산양도허가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대해 도지사는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의 위임에 의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고시(이하 '이 사건 고시'라고 한다)에서 전통사찰의 부동산양도허가 신청서에는 그 구비서류의 하나로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 승인서'를 첨부하게 되어 있음에도 甲이 제출한 신청서에는 위 승인서가 첨부되어 있지 않았음을 확인하고, 2016. 5. 9. 甲에게 30일 이내에 위 승인서를 첨부할 것을 요구하였다. 그러나 甲은 이 사건 사찰이 속하는 종단(宗團)으로부터 승인서를 받지 못하였고, 이에 따라 도지사는 2016. 6. 20. 위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거부하는 것이 타당하다."는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甲이 제출한 신청서를 제출하였다. 이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2016. 8. 1. 甲에 대해서 위 승인서가 첨부되지 않았음을 이유로 부동산양도허가 신청을 거부하는 처분을 하였다. (총 50점. 이하 첨부한 참조조문을 기초로 문제에 대한 답변을 하시오.)

1. 甲은 도지사가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의견서를 제출한 조치를 항고소송으로 적법하게 다툴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5점)
2. 甲은 이 사건 고시에서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 승인서'를 첨부서류로 요구하는 것은 위법이므로 그에 따른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거부처분은 위법이라고 주장한다. 그 주장의 타당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3. 만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甲에 대해서 부동산양도허가를 처분하면서 "90일 이내에 '사찰이 속한 단체의 대표자 승인서'를 제출할 것"을 부관으로 하였다고 하자 이에 대해 甲은 그 부관이 위법함을 이유로 부관만을 다투는 항고소송을 제기하고자 한다. 그 소

송의 적법성과 승소가능성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단 소송의 적법성은 5점, 승소 가능성은 10점)

4. 甲이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을 상대로 그 거부처분에 대해 적법하게 제기한 항고소송에서,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이 사건 토지의 양도는 이 사건 사찰의 고유목적에 부합되지 아니하고 그 양도로써 이 사건 사찰의 존립이 위태롭게 될 우려가 있어 그 양도는 허가의 실체적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것이므로 원고의 허가신청을 받아들이지 아니한 이 사건 처분은 결국 적법하다.”는 주장을 변론하였다. 이 주장이 만일 타당하다고 할 때에 관할법원이 바로 이 점을 이유로 하여 원고의 청구를 기각할 수 있는지 여부를 설명하시오. (15점)

참조조문 (현행 법령을 사례해결에 적합하도록 수정하였음)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전통사찰”이란 불교 신앙의 대상으로서의 형상을 봉안하고 승려가 수행하며 신도를 교화하기 위한 시설 및 공간으로서 제4조에 따라 등록된 것을 말한다.
2. “주지”란 전통사찰의 대표자로서 사찰의 운영 및 재산을 관리하고 전통사찰의 보존·발전·계승을 관장하는 승려를 말한다.
3. “전통사찰보존지”란 불교의 의식, 승려의 수행 및 생활과 신도의 교화를 위하여 사찰에 속하는 토지를 말한다.
4. “부동산”이란 사찰에 속하는 대지·전답·임야 및 건조물을 말한다.

제4조(전통사찰의 지정 및 등록) ① 사찰의 주지는 운영·관리 중인 사찰을 전통사찰로 지정받으려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특별시장·광역시장·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도지사”라 한다)를 거쳐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전통사찰의 지정을 신청할 수 있다.

②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1항의 신청에 의하거나 직권으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찰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통사찰로 지정할 수 있다.

1. 역사적으로 볼 때 시대적 특색을 뚜렷하게 지니고 있다고 인정되는 사찰
2. 한국 고유의 불교·문화·예술 및 건축사의 흐름을 이해하는 데에 특히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3. 한국 문화의 생성과 변화를 고찰할 때 전형적인 모형이 되는 사찰
4. 그 밖에 문화적 가치로 보아 전통사찰로 등록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사찰

③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전통사찰을 지정하면 이를 고시하고 그 사찰의 주지에게 알려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통지를 받은 사찰의 주지는 시·도지사에게 전통사찰의 등록을 하여야 한다. 등록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에도 같다.

⑤ 제2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전통사찰의 지정과 통지 및 등록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제9조(동산·부동산의 양도 등 허가) ①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이나 부동산(해당 전통사찰의 전통사찰보존지에 있는 그 사찰 소유 또는 사찰이 속한 단체 소유의 부동산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을 양도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② 전통사찰의 주지는 동산 또는 부동산을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하려면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시·도지사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부동산을 양도 또는 대여하거나 담보로 제공한 경우에는 이를 무효로 한다.

「전통사찰의 보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9조(허가신청 절차) ① 전통사찰의 주지가 법 제9조 제1항에 의한 허가를 받고자 하는 때에는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정하는 허가신청서를 관할 시·도지사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허가신청서를 제출받은 시·도지사는 허가에 관한 의견서를 첨부하여 문화체육관광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③ 이하 생략

민 법

【문 1】 아래의 사실관계를 읽고 다음 질문에 답하십시오. (총 50점. 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의함)

〈사실관계〉

• X1 토지와 X2 토지에 관하여는 2004. 5. 15. 甲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고, Y 건물에 관하여는 2005. 4. 1. 甲 명의의 소유권보존등기가 마쳐졌으며, Y 건물은 X1 토지와 X2 토지에 걸쳐서 세워져 있다.

• 甲은 2007. 1. 12. 乙에게 X2 토지와 Y 건물을 각각 매도하여 乙은 2007. 2. 20. 위 토지와 건물에 관하여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쳤는데, 甲의 대여금 채권자인 丙이 甲을 상대로는 대여금 청구, 乙을 상대로는 Y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이 사해행위임을 이유로 위 건물에 관한 매매계약 취소와 원상회복 방법으로 소유권이전등기의 말소등기절차 이행 청구의 소를 제기하여 2009. 1. 14. 丙이 전부 승소하였고, 그 무렵 위 판결이 확정되었다.

- 2009. 3. 10. 위 확정판결을 원인으로 Y 건물에 관한 乙 명의의 소유권이전등기가 말소되었고, 이후 丙의 강제경매신청에 따라 Y 건물에 대하여 경매개시결정이 이루어지면서 2010. 11. 5. 경매개시결정 기입등기가 되었고, 그 경매절차에서 丁이 매각허가를 받아 2011. 6. 3. 매각대금을 납부하고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 한편 甲은 2006. 8. 20. X1 토지에 관하여 자신의 채권자인 제3자 앞으로 근저당권을 설정하였고, 위 근저당권에 기하여 진행된 임의경매절차에서 戊가 2008. 10. 17. 매각대금을 납부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하였다.

1. 乙이 丁을 상대로 Y 건물철거와 X2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丁은 X2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다. 丁의 항변에 대하여 그 당부와 논거를 기재하시오. (25점)
2. 戊가 丁을 상대로 Y 건물철거와 X1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丁은 X1 토지에 관하여 법정지상권을 취득하였다고 항변하였다. 丁의 항변에 대하여 그 당부와 논거를 기재하시오. (25점)

[문 2] 甲은 2014. 9. 25. 乙에게 자신 소유의 A 주택을 8억 원에 매도하면서, 계약금 8,000만 원은 당일예, 중도금 4억 2,000만 원은 2014. 10. 25.에, 잔금 3억 원은 2014. 11. 25.에 지급받기로 하고, 주택의 인도 및 소유권이전등기절차는 위 잔대금의 지급과 동시에 이행하기로 하였다. 또한 乙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계약금은 甲에게 몰취되고, 甲의 채무불이행이 있으면 甲은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을 상환하며, 甲은 A 주택을 현재 점유·사용하고 있는 丙을(임대차계약, 보증금 3억 원, 차임 월 200만 원, 임대차기간 2012. 9. 30.부터 2014. 9. 30.까지, 2012. 10. 2. 주민등록 완료) 퇴거시킨 후에 乙에게 인도하기로 약정하였고, 이후 乙은 계약당일 甲에게 계약금 8,000만 원을 지급하였다. (총 50점)

1.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하여, 그런데 乙은 자신의 사정으로 중도금 지급기일인 2014. 10. 25. 중도금 4억 2,000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그 지급을 차일피일 미루다가 잔금지급 기일이 도과하였다. 한편, 채권자 X는 무자력 상태인 甲에 대하여 대여금채권(원금 5억 원, 이자 연 12%, 변제기 2014. 7. 7.)이 있었는데, 2014. 12. 1. 아래 ① 또는 ②의 방법으로 자신의 채권을 실현하고자 한다.
 - ① X는 甲을 대위하여 乙에 대하여 매매잔대금지급청구 소송을 제기하고는 그 사실을 甲에게 통지하였다.
 - ② X는 자신의 대여금채권을 피보전권리로 하여 甲의 乙에 대한 매매잔대금지급청구권을 가압류 하였다.
- 위 ① 또는 ② 이후 甲과 乙은 A 주택에 관한 공법상 규제사항이 사후 변경되자 위 A 주

택에 관한 매매계약을 합의해제하였다. 이때 乙은 X에게 위 합의해제 사실을 들어 대항할 수 있는지 ①, ②를 비교 설명하시오. (15점)

2.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하여, 매매계약이 체결된 이후 A 주택이 소재하는 D 시에는 혁신형 산업단지가 들어설 것이 유력하다는 뉴스가 2014. 9. 27. 언론에 발표되자 A 주택의 가격은 10억 원으로 급등하였다. 위 뉴스를 접한 乙은 큰 폭의 가격상승이 예상되는 A 주택을 반드시 취득해야겠다는 생각으로 우선 2014. 10. 5. 甲을 상대로 A 주택에 관한 소유권이전등기청구의 소를 관할법원에 제기하였다.

이에 甲은 2014. 10. 15. 乙에게 계약금의 배액인 1억 6천만 원을 같은 달 20일까지 수령할 것과 그 기간을 넘기면 공탁하겠다는 통지를 하면서 乙과의 위 매매계약을 해제한다는 의사표시를 하여 같은 달 17일에 도달하게 하였다.

乙은 자신은 이미 소송도 제기했고, 매도인의 일방적 해제는 부당하다며 같은 달 20일 甲에게 중도금 4억 2천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甲이 수령거절하는 바람에 당일 관할공탁소에 甲을 피공탁자로 하는 변제공탁을 하였다. 甲 또한 2014. 10. 20. 乙을 만난 자리에서 乙에게 1억 6천만 원을 제공하였으나 乙이 강하게 항의하면서 수령을 거절하기에 그 다음 날인 21일에 관할공탁소에 위 1억 6천만 원을 변제공탁하였다.

이 경우 甲의 계약해제는 인정될 수 있는지 논하시오. (20점)

3.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하여, 甲은 2014. 8. 25. 丙과의 임대차계약을 종료시키기 위하여 '임대차갱신거절'의 의사가 표시된 내용증명을 발송하여 같은 달 28일 丙에게 도달시켰다. 이에 丙은 연초에 자신의 근무지가 이전되는 바람에 2014. 1. 11. 자신의 친구 B에게 당분간 거주하도록 A 주택의 점유를 이전해주었기에 지금은 자신이 점유하지 않고 있고, 또 B를 위해 A 주택에 대한 임대차계약을 연장해달라고 요청하였으나, 甲은 A 주택을 매도할 예정이어서 갱신은 어렵다고 답변하였다. 甲은 2014. 10. 1. 丙에게 A 주택을 인도해달라고 요구하였으나, 丙은 임대차계약의 갱신을 주장하면서 인도를 거부하였다.

이에 甲은 2014. 10. 5. 丙을 상대로 A 주택 인도청구소송을 제기하였는데, 변론기일에 출석한 丙은 [① A 주택은 현재 B가 점유하고 있는 상태이므로 甲의 소송은 피고적격을 흠결한 소송으로 각하되어야 한다. ② 또한 본 소송이 실사 적법하더라도 실제 점유하지 않는 자를 상대로 한 소송이므로 이유 없고, ③ 또한 위 임대차는 주택임대차보호법에 의해 묵시의 갱신이 되었다는 점에서도 이유 없다.]는 주장을 하였다. 위와 같은 丙의 각 주장에 대한 당부와 甲의 소송결과에 관해 논하시오. (15점)

민사소송법

【문 1】 A 토지의 소유자인 B는 A 토지를 점유하고 있는 A를 상대로 토지인도를 구하는 소를 제기하였다. (총 50점)

1. A는 A와 B명의로 작성된 매매계약서를 증거로 제출하며 A 토지는 자신이 B로부터 매수한 토지인데 오히려 B가 소유권이전등기절차에 협력하지 않는 상태라고 주장하였다. B는 첫 변론기일에서 매매계약서에 찍힌 인영이 자신의 것이라고 진술하였으나 다음 기일에는 전 회에서의 진술은 착오로 인한 것이며 자신의 인영이 아니라고 주장할 경우 B의 진술은 반복되는지 설명하시오. (20점)
2. 제1심에서 B가 법원을 상대로 기피신청을 하였으나 소속법원 합의부의 기각결정이 내려졌다. 그 후 패소한 B가 항소하였는데, 항소심의 재판장이 제1심의 기피신청재판에 관여한 법관이라면 제척사유에 해당하는지 설명하시오. (15점)
3. C가 A 토지의 소유권을 주장하면서 A를 상대로는 A 토지의 인도를 구하고, B를 상대로 소유권확인청구를 하며 소송에 참가하였다. C의 소송참가 형태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문 2】 1. 기일해태의 효과를 설명하시오. (30점)

2. 상소불가분의 원칙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형 법

【문 1】 서울에 사는 A는 2014. 5. 대전에 사는 사촌동생인 B에게 A 소유의 대전 소재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을 대외적으로 넘기면서 대내적으로는 A가 계속 보유하기로 하는 명의신탁약정을 하였다. B는 그 무렵 위 아파트 1채의 소유권이전등기를 마치고 거기 살던 중 2016. 4. 경제난을 이유로 위 아파트를 매도하고 그 매매대금을 기존 채무의 변제 및 생활비 등으로 소진하였다.

한편 2016. 6. 이 소식을 뒤늦게 알게 된 A는 화가 난 나머지 술에 만취하여 B를 찾아가서 이 일을 따지던 중 B가 어쩔 수 없다는 식으로 계속 핑계를 대자 사촌동생에 대한 배신감 등에 격분하여, 길가의 각목을 주워들고 B를 마구 때려 B에게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늑골골절 등의 상해를 가하고, 그 과정에서 이를 말리던 행인 C의 뺨을 손바닥으로 2차례 때렸다.

乙은 위 상해로 입원치료를 받다가 甲이 손해배상금 지급에 미온적인 태도를 보이자, 2016. 8. 경찰에 '甲이 2016. 6. 칼과 쇠파이프로 乙을 살해하려다가 미수에 그쳤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이에 甲도 화가 나서 2016. 9. 경찰에 '乙이 2016. 4. 甲의 아파트 1채를 매도하여 횡령하였다'는 내용의 고소장을 제출하였다.

甲과 乙의 형법상의 죄책(죄명, 적용법조, 죄수관계 포함, 특별법위반의 죄책은 제외)을 논하시오. (50점)

【문 2】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50점. 단 각 물음은 서로 무관하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에는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1. 甲이 고급와인을 절취할 목적으로 복면을 쓰고 장소를 물색하던 중, 2016. 10. 9. 03:30경 부산시 부산진구 부전2동 소재 5층 건물 중 1층 乙이 운영하는 와인샵에 이르러 위 와인샵의 현관문의 비밀번호를 임의로 눌렀는데 문이 열리자 들어가 위 와인샵 내 셀러에 있던 고급와인 6병 시가 600만 원 상당을 미리 준비한 바구니에 담기 시작하였다. 그러던 중 갑자기 경보음이 울리기 시작하자 甲은 놀라서 담고 있던 와인을 모두 그대로 둔 채 현관문 밖으로 달려 나왔다. 그 때 야간 순찰 중이던 경찰관 丙, 丁은 경보음 소리와 함께 현관문이 열려있던 와인샵에서 복면을 쓰고 급히 달려 나온 甲을 수상히 여기고 甲을 범죄혐의자로 직감하였다.

이에 丙과 丁이 甲을 현행범인으로 붙잡으려고 하자, 甲은 체포를 당하지 않기 위하여 위 경찰관들에게 소리치면서 甲의 손목을 잡고 있던 경찰관 丙의 오른손을 깨물고 곧이어 이를 제지하는 경찰관 丁의 정강이를 발로 걷어차는 등 폭행을 가하였다.

이 경우 甲의 죄책(죄명, 적용법조, 죄수, 피해자가 있는 범죄라면 피해자가 누구인지 포함)을 논하시오. (30점)

2. 甲은 2011. 7. 15.경 乙 소유의 서울특별시 서초구 소재 00아파트 1동 101호를 전세보증금 1억 6,000만 원, 전세기간 2011. 8. 5.부터 2013. 8. 5.까지 2년간으로 정하여 임차하기로 하는 전세계약을 체결하고, 그 무렵 丙 은행에 전세자금 대출신청을 하여 전세보증금 1억 2,000만 원의 대출을 받되, 그 담보로 甲의 乙에 대한 전세보증금 반환청구권 전부(1억 6,000만 원)에 관하여 담보한도금액을 1억 5,600만 원으로 한 권리질권을 설정하게 되었다. 乙은 이 때 "甲이 위 전세보증금반환채권에 대하여 대출채권자 겸 질권자인 丙 은행에게 질권을 설정함에 있어 이의 없이 이를 승낙한다."는 내용의 질권 설정승낙서를 작성하여 丙 은행에 교부하였다. 甲은 2013. 7.경 乙에게 이사를 나가겠다고 한 후 乙이 위 아파트를 丁에게 매도하여 2013. 9. 2.이 잔금일로 정해지자, 같은 날 위 아파트 상가에 있는 공인중개사사무소에서 乙, 丁 등과 만나서 매수인인 丁으로부터 직접 전세보증금 명목으로 9,000만 원을 송금 받고, 乙로부터 나머지 5,000만 원을 지급받았다. 甲은 위와 같이 합계 1억 4,000만 원을 수령하여 임의로 소비하였다.

위와 같은 甲의 행위가 丙 은행에 대한 배임죄(형법 제355조 제2항)가 성립하는지 여부 및 그 이유에 관하여 논하시오. (20점)

형사소송법

【문 1】 다음 물음에 답하시오.(총 50점. 각 물음은 서로 무관함)

1. 75세인 피고인 A가 제1심 판결에 불복하여 항소하였는데,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본인의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경과한 후 비로소 국선변호인 B를 선정하고 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를 하였으나 위 국선변호인 B는 그 때로부터 법정기간인 20일 내에 항소이유서를 제출하지 아니하였다. 이 경우 항소심 법원이 취해야 할 조치에 관하여 논하시오. (10점)
2. 항소심 제1회 공판기일에 피고인 C의 변호인 D가 구술로써 항소를 취하한다고 진술하였으나 피고인 C는 이에 대하여 아무런 의견도 진술하지 아니하였다. 이에 항소심 법원은 피고인 C에 대하여 위 항소취하에 동의하는지 여부에 관한 명시적 의사는 확인하지 않고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한 변호인 D의 최종변론과 피고인 C의 최후진술을 듣고 변론을 종결한 후 선고기일에 판결을 선고하면서 피고인 C의 항소는 취하된 것으로 보아 검사의 항소이유에 대하여만 판단하였다. 위와 같은 항소심 판단의 적법 여부에 관하여 논하시오. (15점)
3. 수사기관 영상녹화물의 증거능력에 관하여 서술하시오. (25점)

【문 2】 피고인 甲과 乙은 “2015. 4. 15. 01:30경 서울 강남역 부근 골목길에서 술에 취한 A의 얼굴을 수차례 때려 피해자에게 약 6주간의 치료를 요하는 안면 골절상을 입혔고, A의 지갑을 강취하였다.”는 공소사실로 서울중앙지방법원에 공소제기되었다. 甲과 乙은 검찰조사에서 위 강도상해사실을 모두 자백하였다. 甲과 乙은 제1회 공판기일에서 검사 측의 증거자료에 대하여 모두 부동의한다는 서면을 제출하였다.

법원은 아래의 각 증거서류를 乙에 대한 공소사실의 증거로 사용할 수 있는지 여부와 그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문1.~문3.)

그리고, 법원은 증인 C의 증언을 피고인 甲과 乙에 대한 특수강도상해죄의 증거로 쓸 수 있는지와 그 근거에 대하여 설명하시오.(문4.)

1. 甲, 乙에 대한 구속적부심사절차에서 피의자 乙의 진술을 기재한 구속적부심문조서. (8점)

2. 제2회 공판기일 법정에서, 검사는 乙에게 자신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의 진정성립을 인정하는지를 물었다. 피고인 乙은 그에 대하여 진술거부권을 행사하였다. 이 경우, 검사가 작성한 乙에 대한 피의자신문조서. (10점)
3. 피해자의 어머니 B가 경찰에 출석했을 때 진술한 내용이 기재된 사법경찰관 작성의 참고인진술조서.(공소사실과 같이 강도를 당했다는 이야기를 A로부터 사건 발생 당일 새벽에 들었다는 내용이 기재되어 있음) (15점)
4. 甲의 친구인 C는 증인으로 법정에 출석하여, “甲과 乙이 공소사실과 같은 범행을 하였다는 말을 甲으로부터 들었다.”고 증언하였다. (17점)

상 법

【문 1】 甲은 건설기계 임대 및 판매를 영업으로 하는 사람(자연인)이고, 주식회사 A는 건설기계 부품 유통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주식회사이다. 주식회사 A의 법인등기사항증명서상 설립 당시 대표이사는 乙이었으나, 2015. 10. 2.부터는 乙과 丙이 함께 주식회사 A의 공동대표이사로 경료되어 있다. 甲은 2015. 10. 12. 주식회사 A의 공동대표이사 중 한 명인 乙과 사이에, 甲이 주식회사 A에 대하여 2억 원을 이율 연 7%(연체 시 10%), 변제기 2016. 5. 31.까지로 정하여 대여하는 내용의 대여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위 대여계약서상 차용인으로 ‘주식회사 A 대표이사 乙’이라고 기재되어 있고, 주식회사 A의 인감이 날인되어 있다.

이와 같은 사실관계를 전제로 하여 아래 각 문항에 답하시오.(다음 각 설문은 상호 관련성이 없고, 견해의 대립이 있는 경우 대법원 판례에 따른 것) (총 50점)

1.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하여, 공동대표이사의 선임절차는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공동대표이사 丙은 2015. 10. 4. 건강상의 이유로 乙에게 주식회사 A의 경영권 및 운영권 일체를 위임한다는 위임장을 작성하여 주었다. 乙은 丙의 위와 같은 위임에 따라 별다른 장애 없이 독자적으로 회사운영권을 행사할 수 있었다. 甲은 乙이 주식회사 A의 공동대표이사에 불과하다는 사실을 알지 못하였다.
이 경우 주식회사 A가 위 2억 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2.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하여, 乙은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丙이 대표이사로 선임되었는데, 감사 丁은 2015. 10. 2. 乙이 위와 같이 대표이사에서 해임되고 丙이 단독으로 대표이사로 선임되었음을 알면서도 대표이사의 직인을 도용하여 관련 서류를 위조한 후 위조 서류를 사용하여 乙과 丙이 공동대표이사로 선임된 것처럼 변경등기를 신청하였다.

위 등기신청에 의하여 乙과 丙이 위와 같이 공동대표이사로 등기되었고, 공동대표이사 등기는 2015. 10. 2.부터 2015. 10. 12.까지 존속되었다. 甲이 위와 같은 사정을 알지 못한 경우, 주식회사 A가 위 2억 원에 대하여 변제할 책임을 부담하는지에 관하여 설명하시오. (15점)

3. 위 기본 사안에 추가하여, 단독 대표이사였던 乙은 2015. 9. 1. 甲과 사이에, “乙이 甲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1억 원의 차용금 채무를 면하는 대신, 甲이 주식회사 A에 대하여 부담하고 있는 5천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를 면제 받는다.”라는 내용의 약정을 하였다. 위와 같은 약정 이후 2015. 10. 2. 乙과 丙이 공동대표이사로 적법하게 선임되었다가, 乙이 한 위 약정 내용이 이사회에 알려지게 되어 乙은 2015. 11. 2. 대표이사에서 해임되었다. 주식회사 A가 甲을 상대로 위 5천만 원의 물품대금 채무의 이행을 구하는 소를 제기하자, 甲은 2015. 9. 1. 乙과 사이에 한 위 약정에 따라 물품대금 채무가 모두 면제되었다고 다투고 있다. 甲의 이러한 주장은 받아들여질 수 있는지 설명하시오. (15점)

【문 2】 1. 자기 주식의 취득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30점)

2. 화물상환증의 물권적 효력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20점)

부동산등기법

【문 1】 가등기와 관련된 다음의 사항들에 대하여 설명하시오. (총 50점)

1. 가등기에 의한 본등기를 하였을 경우 등기관이 하여야 할 가등기 이후 등기의 처리 (35점)
2. 가등기의 말소등기 (15점)

【문 2】 판결에 의한 등기신청과 관련하여 다음의 물음에 답하시오. (총 50점)

1. 피고(B)는 원고(A)에게 (원인무효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을 이유로) 소유권이전 등기의 말소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 기한 등기절차를 설명하시오.(단 변론종결 후에 B명의의 등기에 채권자 C의 가압류등기가 마쳐졌음) (25점)
2. $A \Rightarrow B \Rightarrow C \Rightarrow D$ 명의로 소유권이전등기가 순차 마쳐졌으나 B, C, D로의 소유권이전 이 원인무효라는 이유로 D는 A에게 소유권이전등기절차를 이행하라는 판결이 확정되었다. 이 판결에 기한 등기절차를 설명하시오.(단 변론종결 후에 D에서 F에게로 소유권이전등기가 마쳐졌음) (25점)